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개인 기업)

(유효기간 2019.04.01~2020.03.31)



CONTENTS

01

온라인 자료 제출 (1 ~ 11p)

02

제출 자료 조회 (12 ~13p)

03

확인 신청 작성

3-1 자료제출 가능한 기업 (14 ~ 18p)

3-2 필수자료제출불가 기업 (19 ~ 25p)

04

진행 상황 보기 (26 ~27p)

05

확인서 출력 / 수정 (28 ~ 30p)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확인 >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2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자료제출 이후, 신청서 작성, 제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STEP 1~5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 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

STEP 5. 확인서 출력/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 T -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우수중소기업DB
-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제출 합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확인서 발급 및 홈페이지서비스일... 2019-12-30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따른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2020-02-07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9-11-11	중소기업확인서의 주업종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 2020-01-16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유효기간 :2019... 2019-03-04	최근사업기간 말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0-01-13
2018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발급절차, 문의연락처 2018-03-23	관계기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0-01-16
2017년 결산에 따른 12월 결산기업 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2018-03-05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0-01-16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확인서 주된 ... 2017-11-06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01-17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 (갱신) 발급절... 2017-03-10	담당직원의 퇴사로 아이디를 알수가 없어요 2020-01-13

- * 개인기업 제출자료**
- 2016, 2017, 2018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 2018년 부가세 전자신고파일 (3개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제출하면 제출 X)
 - 2018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홈 > 중소기업확인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 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자료제출(법인기업)
- 자료제출(개인기업)**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명	자료제출방법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
1. 결산 완료한 최근 3개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2016,2017,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제출 방법]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화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제출 ■ [신청기업 제출 방법]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및 비밀번호 받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수정, 기한후 신고파일 및 결산월 이 변경된 경우 자료제출 불가 ■ 원천세 기한 후, enc 신고파일 제출 불가 *enc파일 원본으로 제출 **원천세 제작시 신고유형에 따라 월별 (12개) 및 분기 (2개) 해당월 로 각각 제작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자료제출 매뉴얼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 ■ 자료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2. 결산 완료한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제출 방법]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전자신고파일만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엑셀, jpg, zip 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 세무대리인은 회원가입(로그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전, 당해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동안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인 (재무제표 발행을 하지 않는 사업자) 경우에는 소득세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가능
-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은 원천세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에서 원천세 미신고 기업에 체크하여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만 신고하는 경우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제출서류조회하기]에서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 기업은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업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만 확인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신청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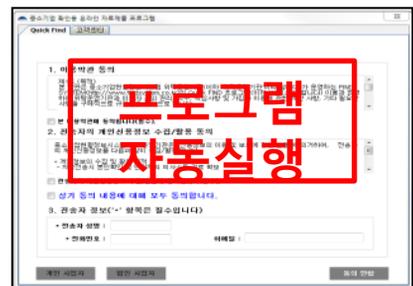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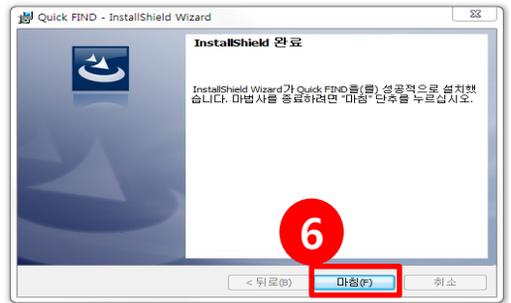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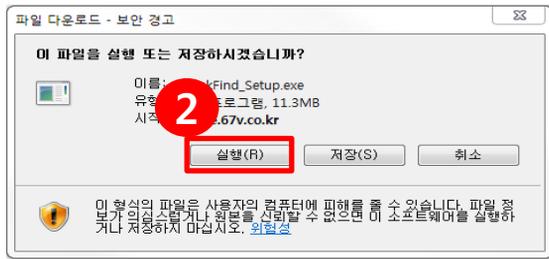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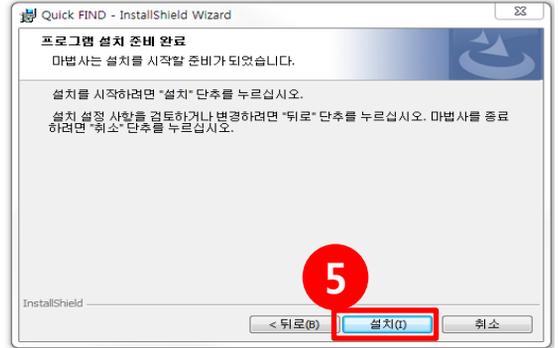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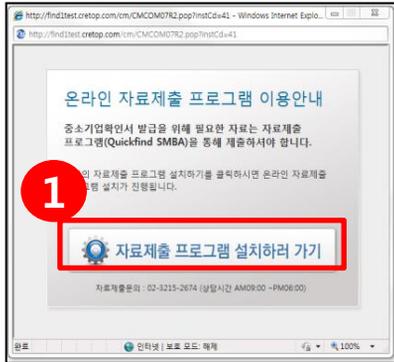
▼ 아래 ①~③에 속하는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자료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의 제출 자료안내는 [공지사항]-[확인서 신규(갱신)발급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유의 사항

1. 기한후, 합산신고(임대사업자포함), 공동대표, 수정신고파일
2. 전자신고파일 제작에 오류가 발생하는 기업
 - ▶ 특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 기업 포함
 - ▶ 간편장부대상 (재무제표가 없는 사업장)은 소득세 제출할 필요 없음

- 1. '자료제출 (개인기업)' 탭 클릭**
- 2. 자료 제출 프로그램 설치**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 클릭 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설치 완료 후 자동으로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실행
 - 최초 설치 이후에는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 클릭 시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
- 3. 자료 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수동으로 설치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진행 순서



중소기업 확인용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Quick Find 고객센터

*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화면크기를 마우스로 조정가능합니다.

1

1. 이용약관 동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위탁운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FIND SYSTEM(<http://www.findsystem.co.kr>)의 Quick FIND 프로그램(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가입과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필수).

2. 전송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위탁운영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송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활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목적
- 자료전송시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 의사소통 경로 확보

전송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필수).

상기 동의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2

3. 전송자 정보(*' 항목은 필수입니다)

* 전송자 성명 : * 전화번호 :

이메일 :

3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1. 이용약관 동의 및 전송자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동의(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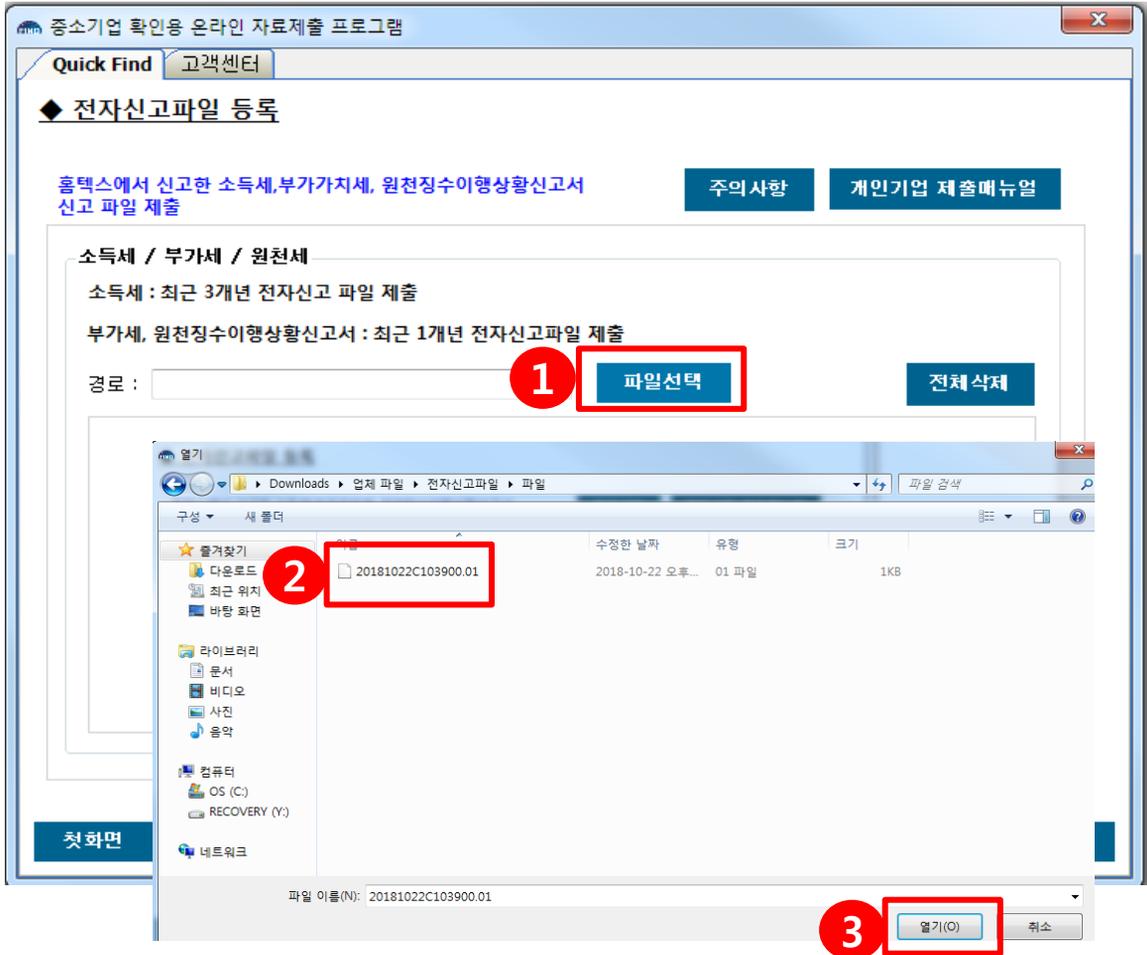
- 동의 박스에 모두 동의 하셔야 자료를 제출 가능

2. 전송자 정보 입력

- 자료제출 하는 전송자 정보 입력 (세무대리인 제출 시 세무대리인 정보 입력)

3. 개인사업자 선택

- 1, 2번 항목을 입력 후 개인사업자를 선택



1. 제출할 전자신고파일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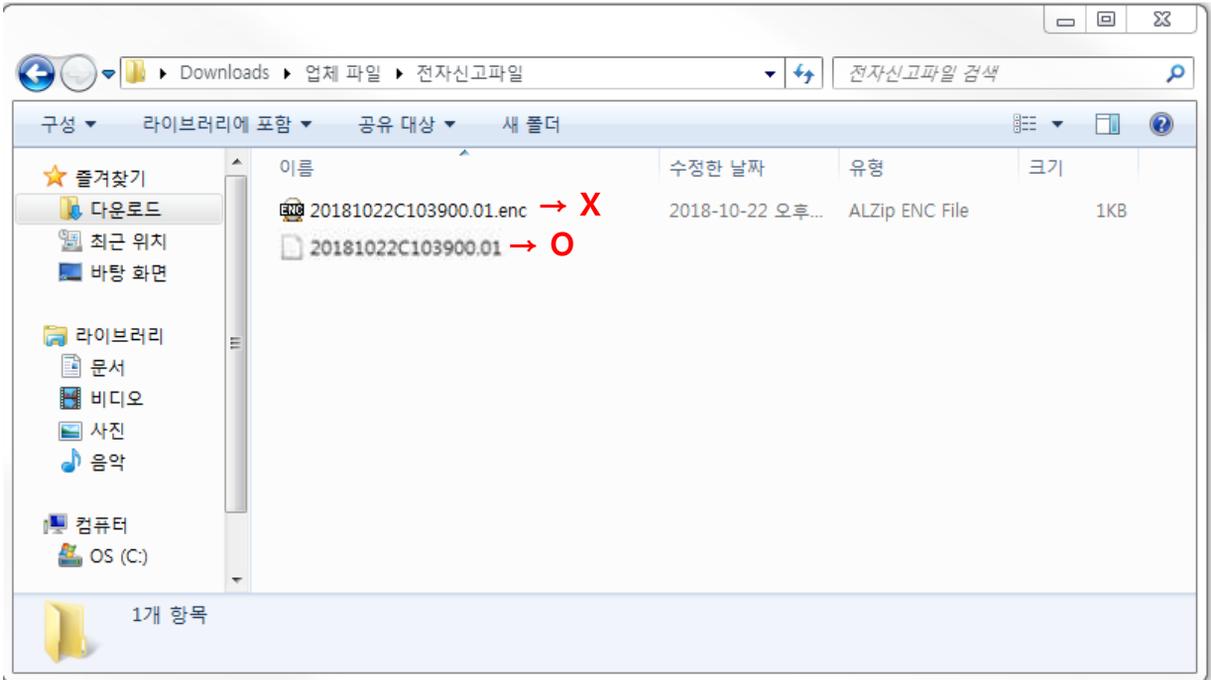
- PC에 저장되어 있는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파일선택' 클릭 후 첨부

2. 제출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파일 선택 후 업로드 할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 또는 Ctrl키를 눌러 일괄 업로드 가능

* 반드시 '전자신고파일' 형식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PDF, XLS, JPG 파일 등은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의 경우 2018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소득세 : 수정, 기한 후, 합산 신고 파일 및 공동대표 일 경우
자료제출 불가

원천세 : 기한 후, **ENC파일 제출불가** (ENC 파일은 원본파일로 다시 제작 후 제출)
원천세는 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로 각각 제작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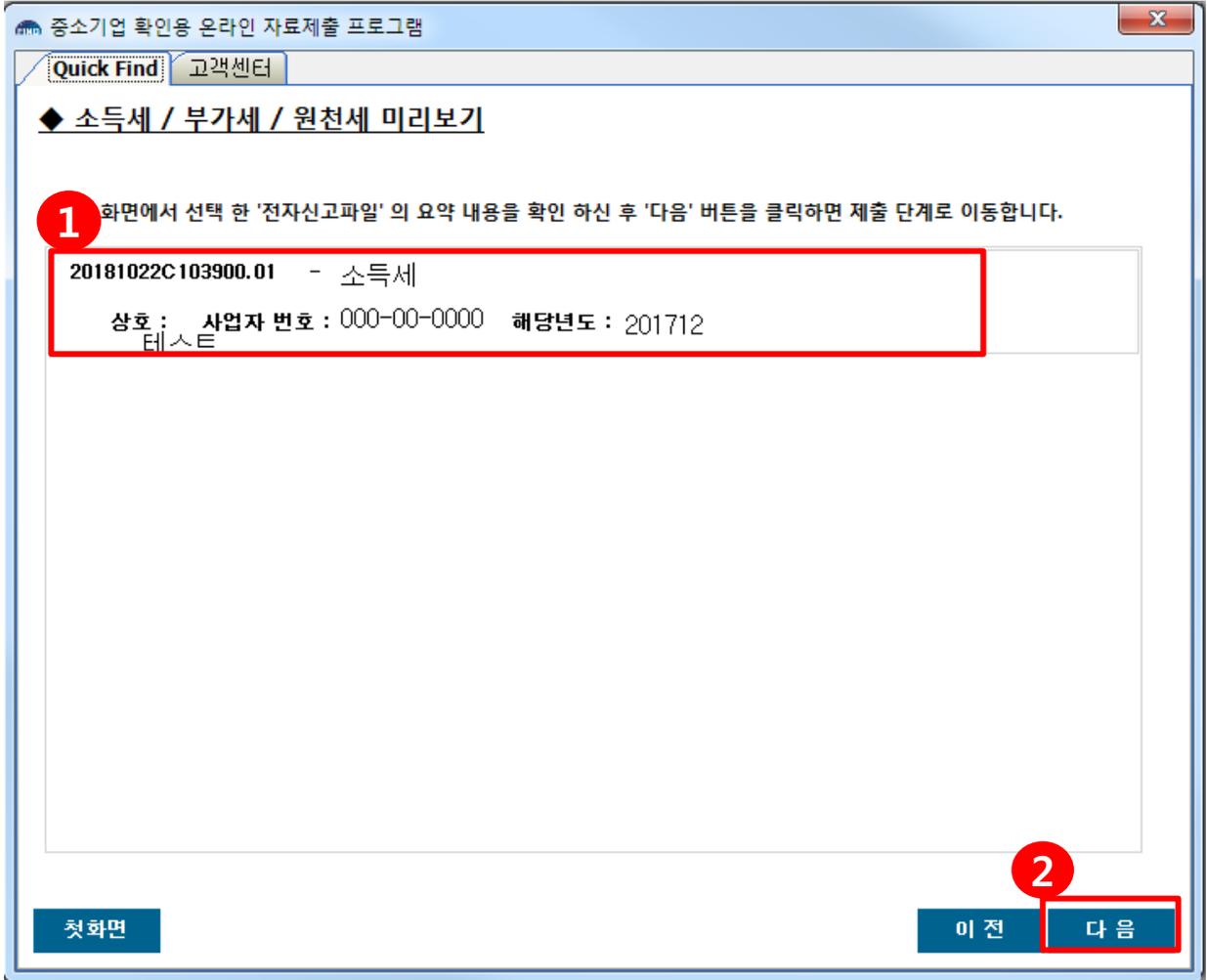
부가세 : 수정신고, 월별신고 제출 불가



1, 2. 전자신고파일 암호 입력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파일 제작 시 작성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 여러 개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파일들의 비밀번호가 동일하면 '일괄적용' 체크
- 파일명이 동일 할 경우 확장자(.01) 앞부분의 파일명 수정해서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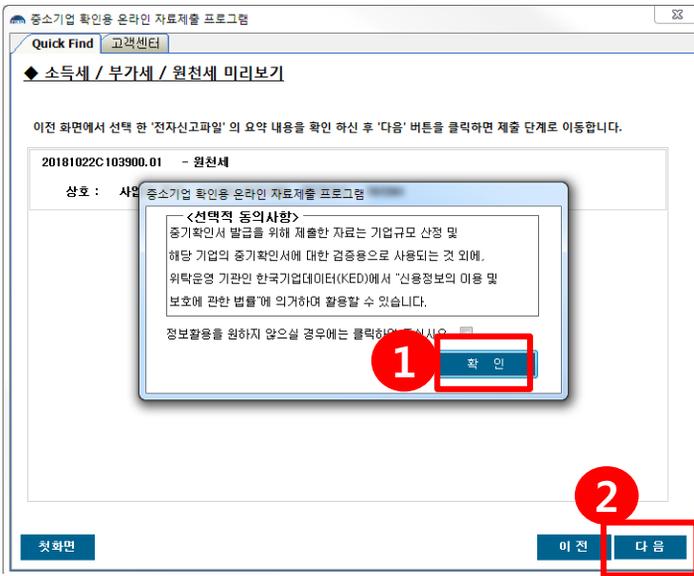
3. 파일 선택이 다 되었으면 '다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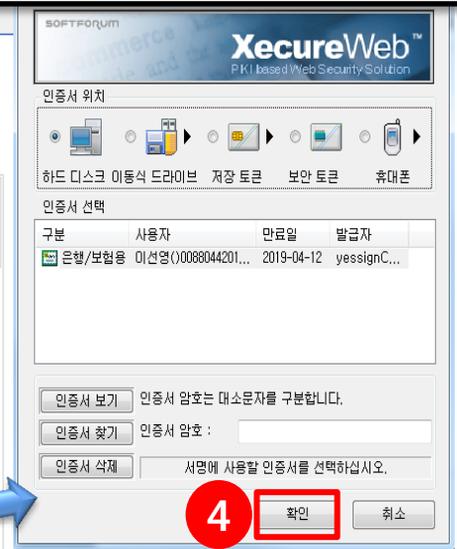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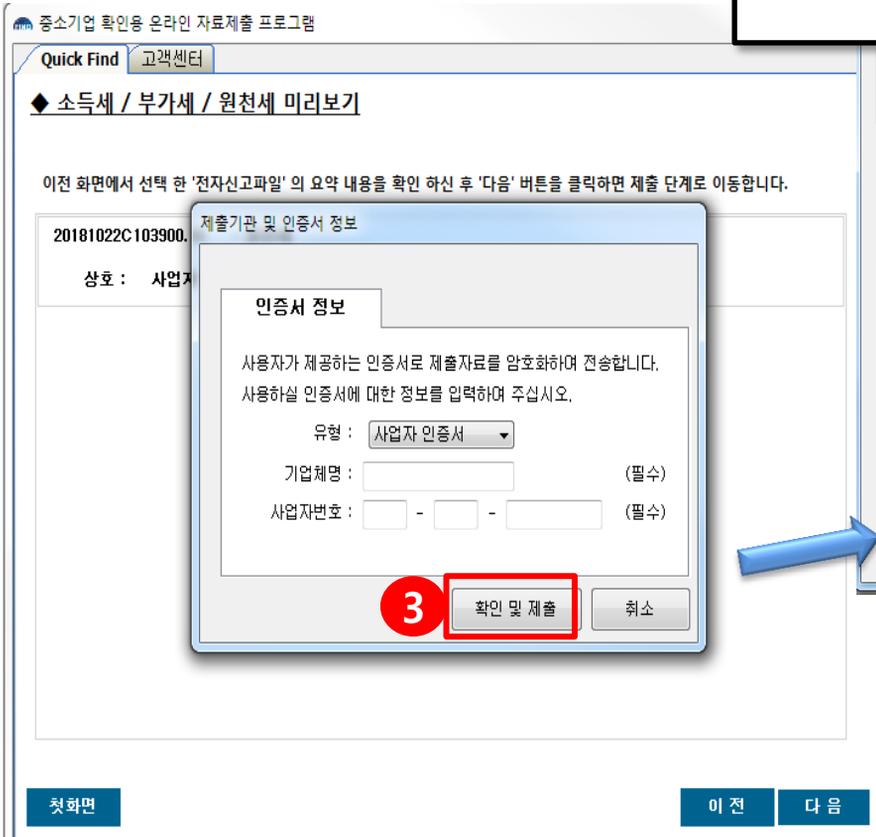
1. 제출 할 자료의 미리보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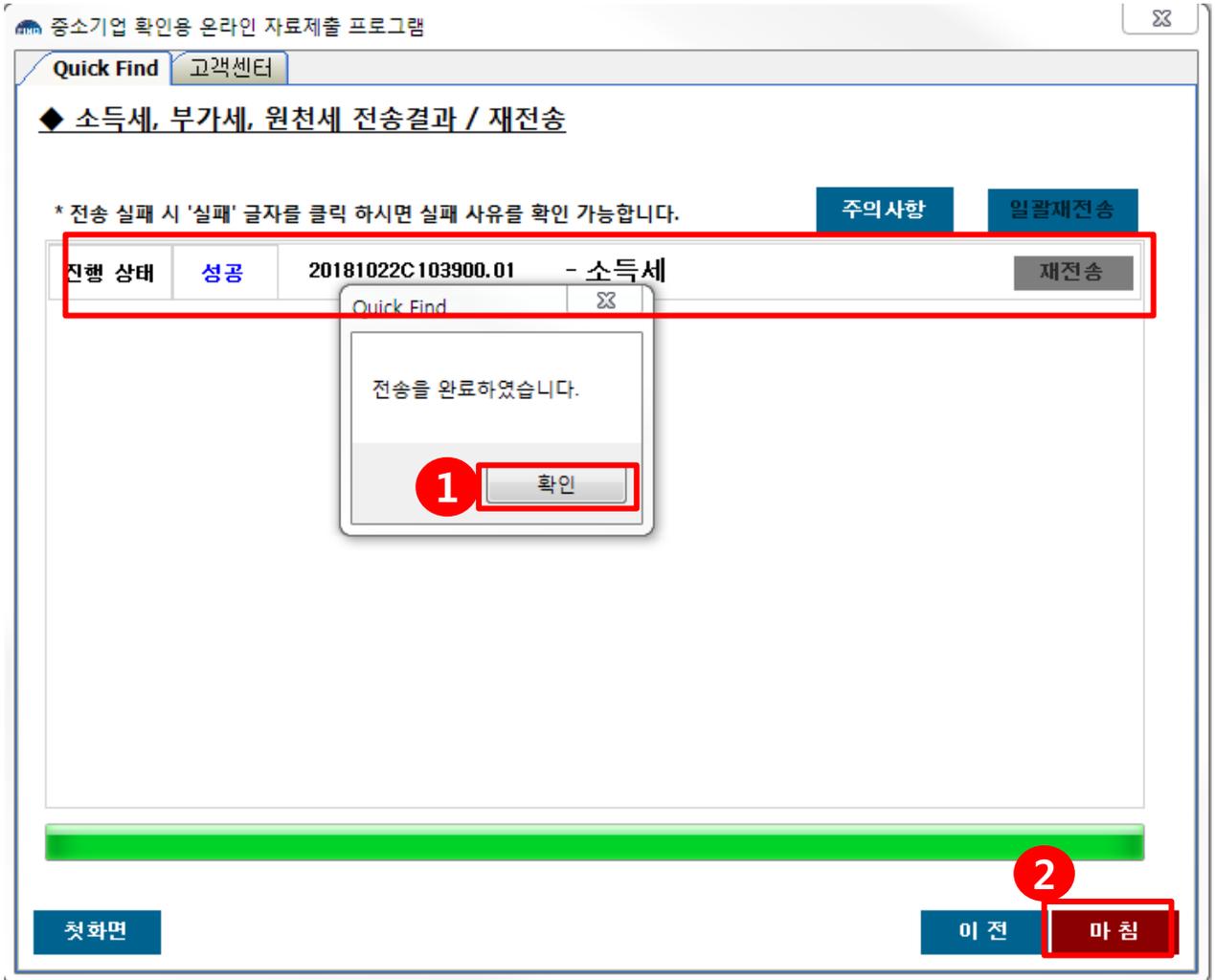
- 소득세, 원천세, 부가세 파일이 맞는지 상호와 사업자번호, 해당연도가 맞는지 확인

2. '다음' 클릭



1. 자료 활용 동의 사항 확인 후 (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으면 체크박스에 클릭 후 확인)
 2. '다음' 클릭
 3.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
 - 사용할 인증서가 사업자 인증서일 경우 사업자 인증서 선택
 - 개인 인증서일 경우 개인 인증서 선택
- ※ 인증서는 인증만 가능하면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도 상관없음





1. 자료제출 완료 할 경우 진행 상태가 표시 됨. '확인' 클릭
2. 성공으로 나오면 '마침'을 클릭하여 종료

※ 진행상태의 성공은 전자신고 파일 여부만 확인하므로 전자신고파일이 맞아도 파일이 내부적으로 깨졌을 경우 조회되지 않음. 성공이 아닌 실패로 뜬다면 파일 제작이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제작할 것.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 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조회'
클릭

공지사항 >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확인서 발급 및 홈페이지서비스 일... 2019-12-30
-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9-11-11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유효기간 :2019. ... 2019-03-04
- 2018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발급절차, 문의연락처 2018-03-23
- 2017년 결산에 따른 12월 결산기업 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2018-03-05
-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확인서 주된 ... 2017-11-06
-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 (갱신) 발급절... 2017-03-10

자주하는 질문 >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따른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2020-02-07
- 중소기업확인서의 주업종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 2020-01-16
- 최근사업기간 말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0-01-13
- 관계기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0-01-16
-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0-01-16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01-17
- 담당직원의 퇴사로 아이디를 알수가 없어요 2020-01-13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우수중소기업 문의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상용 공간
기업마당



WORKNET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확인



홈 > 중소기업확인 > 제출서류조회하기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 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제출서류조회하기

제출서류 조회

1

자료조회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 ▾

제출기간조회 2019-02-11 2020-01-30 검색

2

No	업체명	사업자번호	제출자료기준일	제출자료명	자료제출일	제출자명	원천구분
25		20181201-2018120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19/06/20 13:47:05		월별
24			20181201-2018120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19/04/17 18:14:51		월별
23			20181101-2018110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19/06/20 13:46:58		월별
22			20181101-2018110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19/04/17 18:13:23		월별
21			20181001-2018100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19/06/20 13:46:35		월별

1. 조회할 자료 및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2. 제출 된 자료조회 가능
 - 소득세 → 재무제표
 - 부가세 → 부가세매입매출상세
 - 원천세 → 원천징수_전자신고
 위의 항목으로 조회 가능

자료제출 가능 기업 신청서 작성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접수 완료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제05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클릭

공지사항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확인서 발급 및 홈페이지서비스 일...	2019-12-30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9-11-1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유효기간 :2019. ...	2019-03-04
2018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발급절차, 문의연락처	2018-03-23
2017년 결산에 따른 12월 결산기업 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2018-03-05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확인서 주된 ...	2017-11-06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 (갱신) 발급절...	2017-03-10

자주하는 질문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따른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2020-02-07
중소기업확인서의 주업종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	2020-01-16
최근사업기간 말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0-01-13
관계기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0-01-16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0-01-16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01-17
담당직원의 퇴사로 아이디를 알수가 없어요	2020-01-13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우수중소기업 문의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KeD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생존 공간
기업마당

WORKNET



홈 로그아웃 나의정보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확인



☰ > 중소기업확인 > 신청서작성하기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 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 중소기업여부알아보기

신청서 작성하기

☞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시 신청기업의 정보 및 경쟁입찰제한여부 확인서 등을 허위 또는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동 시스템 신청서 및 화면에 직접 입력한 사항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자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사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5회 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체동의

확인

Q :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시 '연결하려는 페이지 오류'가 발생 합니다.

A : [나의 정보]에서 기업정보 입력 후 재접속 바랍니다.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1. **기업명** * 한국기업데이터 **2. 사업자명** * 송병선

3. 기업유형 * 개인기업 **본점사업자등록일** * 2019-10-04

본점 사업자번호 * 123-11-11111 **법인등록번호** *

*고유번호입력불가

본점 사업장주소 * 07237 **우편번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기업데이터(여의도동)

4. 최근사업기간말일 * 2018-12-31 예시: 개인/법인 사업자[2018.12.31]

확인서 지정정보표기여부 * 여 부 **지점 사업자번호** *

지점 사업장주소 * **우편번호**

5. 확인서용도 * 공공입찰용

외국기업 여부 * 여 부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 **6. 주업종** * J-정보통신업

업종 여부 선택안함

7. 2018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J-정보통신업

8.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창업기업 및 업종이 1개인 경우 위의 업종과 동일하게 선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최저액 미달 등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7. 저장 **8. 다음**

1. 기업유형 : 개인기업

2.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3. 최근사업기간말일 : 2018-12-31

4.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공공입찰용 + 그 외/그 이외 중 선택

5. 주업종 :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6. 2018년 발생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 전년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선택

7-8. 저장 후 다음 페이지 이동

※ 나머지 항목은 선택 하지 말 것.

신청서 작성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가?
 -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합·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지배 또는 존속의 관계
 -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 가족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해당하지 않음

-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 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 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피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기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 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들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십니까?

예 아니요

작성일자 2020-02-11 김철수 대표자 홍길동

이전 저장 다음

*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 당일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sminfo.mss.go.kr 내용: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반영됩니다.**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확인



☰ > 중소기업확인 > 신청서작성하기

중소기업확인

신청자정보

- 중소기업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신청자성명 * 김철수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 1234

회사전화번호 * 02 - 1111 - 1111 회사팩스번호 02 - 1111 - 1111

이메일 * 90645 @ kedkorea.com 직업입력

이전

저장

☑ 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 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기 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센터)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자료제출 불가능 기업 신청서 작성 절차 (간편장부, 원천세 미신고 기업만 해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접수 완료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05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클릭

공지사항 >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확인서 발급 및 홈페이지서비스일... 2019-12-30
-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9-11-11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유효기간 :2019. ... 2019-03-04
- 2018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발급절차, 문의연락처 2018-03-23
- 2017년 결산에 따른 12월 결산기업 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2018-03-05
-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확인서 주된 ... 2017-11-06
-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 (갱신) 발급절... 2017-03-10

자주하는 질문 >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따른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2020-02-07
- 중소기업확인서의 주업종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 2020-01-16
- 최근사업기간 말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0-01-13
- 관계기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0-01-16
-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0-01-16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01-17
- 담당직원의 퇴사로 아이디를 알수가 없어요 2020-01-13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우수중소기업 문의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KeD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생존 공간
기업마당

WORKNET



홈 로그아웃 나의정보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확인 > 신청서작성하기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 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 중소기업여부알아보기

신청서 작성하기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시 신청기업의 정보 및 경쟁입찰제한여부 확인서 등을 허위 또는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동 시스템 신청서 및 화면에 직접 입력한 사항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자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사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8회 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체동의

확인

Q :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시 '연결하려는 페이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A : [나의 정보]에서 기업정보 입력 후 재접속 바랍니다.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1. 명 * 한국기업데이터 2. 자명 * 송병선

기업유형 * 개인기업 본점사업자등록일 2019-10-04

본점사업자번호 * 123-11-11111 *고유번호입력불가 법인등록번호 *

본점사업장주소 * 07237 우편번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기업데이터(여의도동)

3. 최근사업기간말일 * 2018-12-31 예사: 개인/법인사업자[2018.12.31]

확인서 지정정보표기여부 * 여 부 지정사업자번호 *

4. 지정사업장주소 * 우편번호

확인서용도 * 공공입찰용

외감기업여부 * 여 부

5. 직전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할여부 선택안함

6. 업종 * J-정보통신업

2018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J-정보통신업

(직전연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장업기업 및 업종이 1개인 경우 위의 업종과 동일하게 선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

1. 기업유형 : 개인기업
2.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3. 최근사업기간말일 : 2018-12-31

4.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공공입찰용 + 그 외/그 이외 中 선택

5. 주업종 :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6. 2018년 발생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 전년도 발생 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선택

7. 필수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

- 간편장부 기업일 경우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체크

- 원천세 미신고 기업일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체크

8-9. 저장 후 다음 페이지 이동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7.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최저액 미달 등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8. 저장 9. 다음

신청서 작성하기

※ 주의사항 ※

- 아래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재무정보는 매출액, 자산총액, 3개년 평균매출액 등 모두를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0' 이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도 해당 월만큼 최소한 '0' 이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모든 항목을 입력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주요재무정보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하세요.) 예시 ① 오천만원=50,000 ② 일억원=100,000

결산기준일자	2018-12-31	
1 매출액(천원)	<input type="text" value="10,000"/>	일천만원
2 자산총액(천원)	<input type="text" value="500,000"/>	오백만원
필요항목	매출액(천원)	오천만원
3 2016	<input type="text" value="50,000"/>	50,000
2017	<input type="text" value="10,000"/>	일천만원
	<input type="text" value="60,000"/>	육천만원
2018	<input type="text" value="60,000"/>	60,000
평균매출액	<input type="text" value="40,000"/>	사천만원

입력시 참고사항

최근 주요 재무 정보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의 매출액 참고)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초기 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 입력)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등

-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등
- 사업기간이 3개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1년 또는 2개년 매출액만을 입력

4 5

저장 다음

1. 매출액 :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의 매출액 참고)

2. 자산총액 : 직전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입력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초기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 입력)

<천원 단위> : 숫자 입력시 상단에 한글로 함께 표기 되니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 바람.

3. 해당하는 연도의 매출액 입력.

4. 저장

5. 다음 페이지 이동

근로자 현황

1 '연평균' 상시근로자 값이 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가 음(-)인 경우에는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연평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	1			1				1					3	1
차감대상	연구전 담요원												0	0
	임원												0	0
월계	1	0	0	1	0	0	0	1	0	0	0	0	3	0

-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 판단에 중요한 항목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구전담요원', '임원'을 차감해서 신출합니다. 이 경우 차감하는 '임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차감합니다. 즉, 임원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 '임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입력 대상이 아니며 대상 기업에 한하여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 본점과 별도로 지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인원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입력항목은 '월' 단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한 인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도 퇴사한 임원은 제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
그 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점별로 별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점 상시근로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은 신청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입력) **2** **3**

이전 **저장** 다음

1.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 : 고용한 직원을 의미하므로 '0' 입력

* 개인 기업의 경우 차감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임원은 없으므로 대표자 본인이 대표라고 임원에 숫자 입력하지 말 것.

2. 저장

3. 다음 페이지 이동

신청서 작성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합·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가족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피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들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작성일자 2020-02-11 김철수 대표자 홍길동

이전 **저장** 다음

***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 당일 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sminfo.mss.go.kr 내용: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반영됩니다.**

확인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확인



☰ > 중소기업확인 > 신청서작성하기

중소기업확인

신청자정보

- 중소기업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1

신청자성명 *	김철수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	1234				
회사전화번호 *	02	-	1111	-	1111	회사팩스번호	02	-	1111	-	1111
이메일 *	90645	@	kedkorea.com	직접입력							

이전 **2** 저장

☑ 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 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기 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3 신청서 제출

-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센터)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자료제출 이후, 신청서 작성, **진행 상황 확인** 단계가 완료된 후 발급됩니다.

'진행 상황 확인' 클릭

공지사항 >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확인서 발급 및 홈페이지서비스 일... 2019-12-30
-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9-11-11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유효기간 :2019... 2019-03-04
- 2018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발급절차, 문의연락처 2018-03-23
- 2017년 결산에 따른 12월 결산기업 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2018-03-05
-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확인서 주된 ... 2017-11-06
-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7-03-10

자주하는 질문 >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따른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2020-02-07
- 중소기업확인서의 주업종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 2020-01-16
- 최근사업기간 말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0-01-13
- 관계기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0-01-16
-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0-01-16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01-17
- 담당직원의 회사로 아이디를 알수가 없어요 2020-01-13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우수중소기업 문의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중소 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KeD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영웅 광장이
기업마당

WORKNET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 범위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진행상황보기

진행상황 조회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자료제출]완료 후 [신청서 제출]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반드시 자료제출 완료후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진행상황이 [자료제출 확인요청] 및 [자료미제출]인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조회하기]에서 누락된 필수자료들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조회

기간조회: 2020-01-13 ~ 2020-02-13 검색

2. 진행상황 결과

신청일자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0-02-11	2020-02-11	완료	중소기업여부 확인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완료	

관계기업·직년, 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

1. 진행상황이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 분할 기업 오류' 인 경우 처리 절차
 - 아래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를 클릭하여,관련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

 - *관계기업, 직전년, 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제출
2. 진행상황이 부적합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3. 진행상황이 '금감원 대기업 지분율 확인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기청으로 문의
4. 진행상황이 '판단불가'인 경우 처리절차
 - '비고'란에 있는 '식재'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판단불가건을 식재처리하신 후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연평균', 최근사업기간, 출자기업정보 오기제로 인한 판단불가로 나온 경우는 반드시 오기제한 정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확인서 발급됨)

[지방중기청 안내](#)

1.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클릭
2. 진행결과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자료제출 이후, 신청서 작성, 제출입니다. 반드시 STEP 05를 꼭 클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공지사항 >

-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확인서 발급 및 홈페이지서비스 일... 2019-12-30
-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9-11-11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유효기간 :2019... 2019-03-04
- 2018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발급절차, 문의연락처 2018-03-23
- 2017년 결산에 따른 12월 결산기업 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2018-03-05
-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확인서 주된 ... 2017-11-06
-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17-03-10

자주하는 질문 >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따른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2020-02-07
- 중소기업확인서의 주업종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 2020-01-16
- 최근사업기간 말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0-01-13
- 관계기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0-01-16
-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0-01-16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01-17
- 담당직원의 회사로 아이디를 알수가 없어요 2020-01-13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우수중소기업 문의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중소 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KeD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영웅 광장이 기업마당

WORKNET

중소기업확인

확인서 출력 / 수정

- 중소기업 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 / 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19-02-13 2020-02-13 검색

조회결과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02-11	0010-2020 0000	2019-04-01 ~ 2020-03-31	중기업

<
1
>

확인서 수정
국문확인서 출력
영문확인서 출력

확인서 수정

- 발급용도를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변경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가진단서에 '해당있음'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발

정보를 통해 수정하셔야 합니다.

여부에서 '여'로 체크하고 기업의 영문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발급번호 : 0010-2020-2714

기업명 : 한국기업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 105-86-75080 법인등록번호 : 110111-3173947

대표자명 : 송병선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동)

주업종 : 정보통신업(I)

유효기간 : 2019-04-01 ~ 2020-03-31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0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발급사실 및 발급효용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후에 발급일 이후 일일, 분할 및 잔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각기 과료율 통해 발급할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과료기근의 과태료 등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국립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3년간 사업연도내의 평균내출연률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원의 정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1. 발급된 확인서 선택
2.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 *영문 확인서 사용을 원하면 확인서 수정에서 영문 정보 입력 후 '영문확인서 출력' 클릭
3. 팝업창에서 확인서 확인
4. 확인서 인쇄하여 사용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 범위 +
- 확인서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서류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상황보기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확인서 출력 / 수정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조회결과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02-11	0010-2020-0000	2019-04-01 ~ 2020-03-31	중기업

- 2**
-
-

확인서 수정

3

기업명: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자명: 송병선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동)

지점사업자번호:

지점사업자주소:

용도: 전채종일

확인서지점표기여부: 여 부

영문확인서여부: 여 부

영문기업명:

영문대표자명:

영문주소:

영문지점사업장주소:

4

※ 수정 가능한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확인서 용도, 지점표기 여부. 영문확인서 여부

1. 수정할 확인서 선택
2. 확인서 수정 출력 클릭
3. '확인서 변경 후' 부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수정
4. 저장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수정하였으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 02-6974-1322

THANK
YOU